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등 국유재산 관리 개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69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안 제18조제1항제5호)	3
2.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안 제36조제2항 신설)	12
3.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일시 중단 근거 신설 등 (안 제36조제4항 신설 등)	17
4.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등 납부(안 제73조의4 신설)	22
5. 기타 문구 개정 등	2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22.

다. 회 부 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안 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나.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안 제36조제2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철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안 제36조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안 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에 대해 종전의 현금뿐만 아니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

II. 검토의견

1.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 (안 제1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u>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u>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제18조제1항제5호)	○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u>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안 제18조제1항제5호)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가치하락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유재산 영구축조물 신설 금지의 예외 대상을 기존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1991년 6월 20일에 제정·시행된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규정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유재산이었던 학교 시설과 그 부지는 대부분 공유재산으로 이관되었으나, 학교 건물과는 달리 학교 부지의 경우 토지구획 및 소유권 정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 소유권 일부가 시·도로 이관되지 못하고 현재 국유재산으로 남아있는 사례가 있음.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1991년) 전에 설립된 학교 가운데 2,806개 학교의 4,619천m²을 시·도 교육청이 국유재산 점유 중인 상황임.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1991년) 이후 소유권 변동 >

구 분	법 시행 이전	법 시행 이후	
		원칙	실제
학교 건물	국유재산	시·도 교육청 재산	시·도 교육청 재산
학교 부지	국유재산	시·도 교육청 재산	일부 부지 미이관으로 국유재산을 시·도 교육청이 점유 (2,806개 학교, 4,619천m ²)

원칙적으로 1991년 전에 설립되어 국유재산을 점유 중인 학교일지라도 영구건축물 축조 금지가 적용되어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불가하였으나, 2020년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에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참고자료 1 ‘시·도 교육청별 공립학교 국유지 점유 현황’ 참조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음.²⁾

<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예외 사유 >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지방교육자치 시행(1991년) 이후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특히 1991년 이전 설립된 학교의 부지, 건물 등을 활용하여 1991년 이후 새로운 학교를 개교한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과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임. 교육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학교는 현재 전국 12개교임.³⁾

2) 법률 제17137호, 2020.3.31.공포, 2020.10.1. 시행

3) 참고자료 2 ‘지방교육자치 이후 국유지 점유 학교 현황’ 참조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첫째, 노후화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설립된 학교일지라도 설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설립된 기존 학교의 시설이나 부지를 이용하여 신규로 개교한 학교의 경우 그 시설의 연식은 최소 34년 이상 경과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상당히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이용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과밀화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교육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을 통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학교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은 학교 시설의 증·개축 허용 여부를 학교 시설의 노후도가 아닌 학교의 설립일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록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었을지라도 설립일이 1991년 이후라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 여부는 설립일이 아니라 학교시설이 교육을 위해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대상 학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⁴⁾.

4)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개축 대상기관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u>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u> 6. (생략) ② (생략)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u>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시·도 교육청별 공립학교의 국유지 점유현황('23.4.1. 기준)

○ '91.6.20. 이전/이후 설립된 학교시설의 국유지 점유면적 및 재산가액

(단위: 개교, 천m², 백만원)

교육청	1991년 6월 20일 이전			1991년 6월 20일 이후			계		
	개교	면적	재산가액	개교	면적	재산가액	개교	면적	재산가액*
서울	156	573	2,170,438	16	53	106,949	172	626	2,277,387
부산	181	601	843,884	19	15	16,746	200	616	860,630
대구	77	107	148,298	14	9	11,049	91	116	159,347
인천	99	177	177,909	33	43	62,862	132	220	240,770
광주	44	32	17,476	11	3	1,668	55	34	19,144
대전	41	38	37,213	7	2	1,363	48	40	38,576
울산	31	21	19,820	38	27	26,168	69	48	45,988
세종	17	28	16,124	2	0	147	19	28	16,270
경기	385	524	420,471	51	50	79,583	436	574	500,055
강원	283	547	120,060	15	24	7,997	298	572	128,057
충북	230	295	37,882	4	6	1,856	234	301	39,738
충남	162	195	36,037	12	18	6,680	174	213	42,717
전북	343	513	64,271	25	15	5,572	368	527	69,843
전남	162	37	1,497	8	3	155	170	40	1,652
경북	401	719	158,824	37	29	8,303	439	748	167,127
경남	122	37	5,423	22	9	2,059	144	46	7,482
제주	74	175	62,770	2	4	5,774	76	179	68,544
합계	2,806 (90%)	4,619 (94%)	4,338,396 (93%)	316 (10%)	308 (6%)	344,930 (7%)	3,125 (100%)	4,927 (100%)	4,683,326 (100%)

참고 2

지방교육자치 이후 국유지 점유 학교 현황

○ 종전 학교시설을 사용하여 '91년 이후 개교한 학교 현황('23.4월 기준)

연번	교육청	학교명	설립 시기 (연월)	기존 학교시설 건축시기 (연월)	국유지 점유면적 (㎡)	재산 가액 (백만원)
1	서울청	서울행림초등학교	92. 5.	91. 1.	75.0	44
2	대구청	서대구중학교	18. 2.	81. 2.	1,180.0	938
3		군위중·고등학교	11. 3.	74. 1.	4,165.0	395
4	경기청	수원 영동중학교	05. 3.	71. 1.	1,185.0	2,509
5		안성 금광초 조령분교	00. 9.	70. 12.	618.0	29
6		양평 정배초등학교	14. 3.	81. 7.	140.0	11
7		수원 경기대명고등학교	02. 3.	69. 3.	453.0	374
8		성남 양영초등학교	94. 9.	54. 11.	7,780.0	23,614
9		용인 두창초등학교	12. 9.	69. 10.	553.0	116
10	경북청	영주 평은초등학교	13. 12.	68. 3.	450.0	17
11		경산 압량중학교	19. 3.	23. 6.	423.0	142
12	제주청	제주 월랑초등학교	07. 1.	84. 2.	3,434.0	4,029

2.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안 제3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u><후단 신설></u> (제36조제1항) - 거짓 진술을 하거나 <u>부실한</u>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제1호) -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제2호)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제3호)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제5호) ○ <u><신설></u>	○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u>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u> (안 제36조제1항) - 거짓 진술을 하거나 <u>거짓으로 작성한</u>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안 제36조제1항제1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중앙관서의 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자에게는 취소 또는 철회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u> (안 제36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3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은 ①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③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또는 ④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에 이루어짐.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음.

한편, 동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47조⁵⁾ 준용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에도 적용됨.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철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관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나,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등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자가 다시 사용허가등을 신청할지라도

5) 「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사용허가등을 제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등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유재산의 종류⁶⁾, 국유재산의 관리주체⁷⁾, 취소·철회 또는 해지의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6)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7)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이 불가능해지는 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⁸⁾에서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3년간 해당 재산에 한하여 대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제36조 제4호)에 대한 사용허가등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미납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철회에 더하여 연체료의 징수 등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를 규정⁹⁾하고 있다는 점, 사용료 미납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4호를 사용허가 제한의 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9)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 ----- ----- ----- .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u>부실한</u> <u>증명서류</u> 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 ----- <u>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u> ----- ----- -----
2. ~ 5. (생략) <신설>	2. ~ 5. (현행과 같음)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자에게는 취소 또는 철회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유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근거 신설 등 (안 제36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u><신설></u> ○ <u>사용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 (제36조제3항)</u> ○ <u>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함 (제36조제4항)</u>	○ <u>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6조제4항)</u> ○ <u>사용허가의 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함. 다만,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의 경우 손실 보상에 같음하여 종전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안 제36조제5항)</u> ○ <u>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함 (안 제36조제6항)</u>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수익의 일시 정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금전 보상과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규정하는 것임.

현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

등을 철회할 수 있으나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야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밖에 없음.

그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해당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사용허가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사용허가등의 절차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면서 종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됨.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등을 철회하기보다 일시적으로 사용·수익 중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자가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유재산의 보수·유지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수익 중지 이후에는 국유재산 사용 가치가 그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므로 종전 사용허가등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사용수익자와 신규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한편, 개정안은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일시 중지한 경우, 제30조제2항 단서¹⁰⁾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또는 일시 중지 사유를 그 사용·수익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부받은 재산으로 한정하던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있음. 이는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를 고지하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방향으로 보임.

10)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 ----- ----- ----- .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u>부실한</u> <u>증명서류</u> 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 ----- <u>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u> ----- ----- -----
2. ~ 5. (생략) <신설>	2. ~ 5. (현행과 같음)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자에게는 취소 또는 철회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③ ----- ----- ----- -----

현행	개정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허가-----.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 보상에 갈음하여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 -----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또는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

4.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등 납부 (안 제7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신설>	○ <u>국유재산의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금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음</u> (안 제73조의4제1항) ○ <u>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u>(안 제73조의4제2항) ○ <u>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u> (안 제73조의4제3항) ○ <u>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u> (안 제73조의4제4항)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등(이하 ‘사용료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납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 ①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②지로를 통한 납부, ③모바일 간편 납부가 가능하나, 신용카드등을 통한 납부는 불가능한 상황임.

신용카드등을 통한 납부를 가능하게 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납부방식 다양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사용료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편의가 증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체료의 발생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¹¹⁾.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¹²⁾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와 유사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부자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첫째,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수수료는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이 납부한 조세를 통해 마련됨. 이는 국유재산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11)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납부 방식은 신용카드등을 통한 납부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수수료 부담이 없는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등을 통한 납부는 납부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납부대행수수료의 납부자 부담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¹³⁾, 「국민건강보험법」¹⁴⁾ 「국민연금법」¹⁵⁾등은 과태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 13)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①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사용료등을 납부하는 경우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타 문구 개정

현행	개정안
○ <u>5년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갱신 가능	○ <u>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갱신 가능 (안 제35조제2항)
○ <u>종전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u> 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갱신 가능	○ <u>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46조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u> 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갱신 가능 (안 제46조제2항)
○ <u>부실한 증명서류</u> 를 제시한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매각계약의 해제가 가능	○ <u>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u> 를 제시한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매각계약의 해제가 가능 (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호)
○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u>체납처분</u>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u>강제징수</u>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u>도시관리계획</u> 을 결정·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u>도시·군관리계획</u> 을 결정·변경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증진하고 다른 법률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 갱신과 관련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미 종전의 허가기간과 무관하게 5년 이내에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고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로 인해 당초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구를 추가할 실익은 없다고 보임.

대부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종전 대부계약 기간 내에서만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부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고 있음. 사용허가는 이미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과 무관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대부계약 갱신 기간은 당초 대부계약 기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시점의 변화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방향으로 보임. 다만, 갱신 시 대부기간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며 ‘종전 대부기간에 관계없이’의 문구를 추가할 실익은 없다고 보임.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및 매각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고의성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정확한 서류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거나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고의성을 전제로 한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생각됨.

한편, 문구변경(채납처분→강제징수,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방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생략)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② ----- ----- -----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 ----- ----- -----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u>부실한 증명서류</u> 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 ----- 거짓으로 작 성한 증명서류-----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6조(대부기간) ① (생략)	제46조(대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② -----

현행	개정안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그</u>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u>부실한 증명서류</u>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생략)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u>체납처분에</u>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 2. (생략)	----- ----- <u>종전의 대부기간에</u> <u>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 ----- ----- -----. 1. (현행과 같음) 2. ----- <u>거</u> <u>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u>----- ----- - 3. (현행과 같음)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강제징수</u>-----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u>도시관리계획</u> 을 결정·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 ----- ----- <u>도시·군관리계획</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u>도시관리계획</u> 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u>도시관리계획</u> 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 ----- ----- ----- <u>도시·군관리계획</u> ----- <u>도시·군관리계획</u> ----- -----.

문 의 처
02)6788-5150